

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 개정이유서

의안번호	147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2. 11. 3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개 정 이 유

- 방법원의 방법수당 가산금제 도입
- 의료 업무수당 인상

2. 주 요 골 자

- 방법원 수당
 - ┌ 종전 :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에 의거 월 40,000원 지급
 - └ 변경 : 방법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 경력연수에 따라
[별표 3]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
-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의료법 제2조 2항에 의거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[별표 1], [별표 2]의 지급구분표에 의거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

3. 관 계 법 령

-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및 의료법 제2조 2항